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7.

발 의 자 : 박균택 · 박 정 · 황명선
박정현 · 박지원 · 허 영
어기구 · 양부남 · 김기표
이건태 · 황운하 · 박해철
박홍배 · 위성곤 · 권철승
김주영 · 박상혁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.

한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,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들이 자택에서 의료·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,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공공주택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, 장애인, 건

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
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10 신설 등).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7제1항제3호 중 “제49조의10”을 “제49조의11”로 한다.

제49조의10을 제49조의11로 하고, 제4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10(복지서비스 통합제공기관에 관한 공급 특례)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, 장애인,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돌봄을 포함하는 복지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필요한 각종 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지사
2.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공공주

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돌봄 등 복지서비스 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 자격,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주택법」 제57조의 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7조의3제6호 중 “제49조의10”을 “제49조의11”로 한다.

제58조제1항제2호 중 “제49조의10”을 “제49조의1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9조의7(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·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제49조의7(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) ① -----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49조의5 및 제49조의10에 따른 거주 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	3. ----- 제49조의11-----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49조의10(복지서비스 통합제공 기관에 관한 공급 특례)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가정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, 장애인,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돌봄을 포함하는 복지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필요한 각종 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지사
2.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

	<u>공임대주택의 돌봄 등 복지서비스 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 자격, 선정 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주택법」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제49조의10(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·처분 등) (생략)	제49조의11(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·처분 등) (현행 제49조의10과 같음)
제57조의3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	제57조의3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

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5. (생략) 6. <u>제49조의10</u>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. (생략) 제5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(생략) 2. <u>제49조의5</u>제6항·제14항 및 <u>제49조의10</u>제6항·제10항을 위반하여 거주 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.·4. (생략)	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제49조의11</u>----- ----- ----- 7. (현행과 같음) 제58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제49조의11</u>----- ----- ----- ----- 3.·4. (현행과 같음)
--	---